

고령친화산업 REPORT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황 및 개정 필요성

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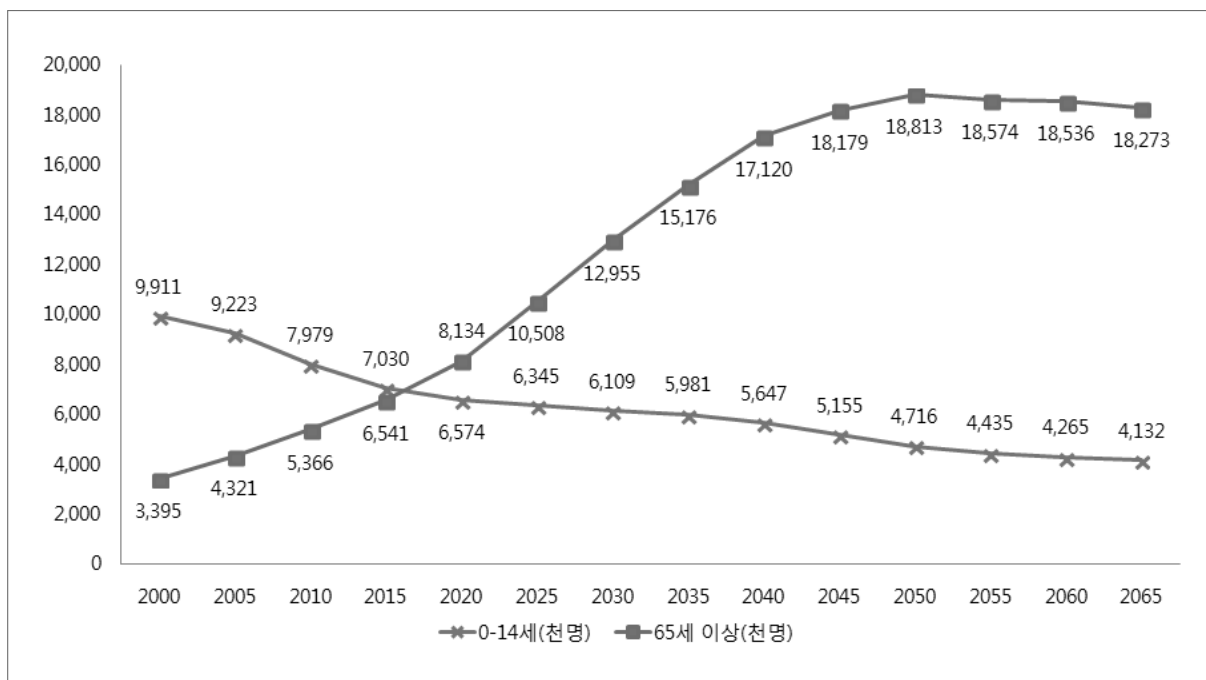
I. 서 론	1
II.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현황 및 개정 필요성	3
III. 결론 및 시사점	9

I. 서 론

②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저출산·고령 사회 기본법('05년), 고령친화산업진흥법('06년) 제정

-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3.2%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
 * 65세 이상 인구 비율 : 7.2%('00)→10.8%('10)→15.6%('20)→24.5%('30)(장래인구추계, 2016, 통계청)
- 인구고령화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육성 기반 구축 필요에 따라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,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

〈 연령층별 전국 추계인구 〉



자료 : 장래인구추계 (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, 2016)

- 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·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체계적 육성이 저해
 -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신설 등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내에 육성지원 조직 마련 및 지원방안 강화 필요
 -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 정부의 종합적인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함
- ② 고령친화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과제의 성과 효과성이 미미함
 - 전 산업에 걸친 타 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·제도 개선,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함
- ③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사항을 모색해 보고자 함

II.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현황 및 개정 필요성

1.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현황

-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(05), 고령친화산업진흥법(06)이 제정되었음

 -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
 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·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, 이 법을 근거로 매 5년마다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
 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에서 언급하는 ‘고령친화산업 육성’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의 근거가 되었으며,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추진하고,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
-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규칙은 부재함

 - 법령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이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총 16조, 동법의 시행령은 총 15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행규칙은 부재한 상태임
 -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,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, 고령친화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표시 등이 있음

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목차 〉

고령친화산업진흥법	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
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제4조(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) 제5조(소비자의 권익보호 등)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(전문 인력의 양성) 제7조(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) 제8조(고령친화산업 표준화) 제9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) 제10조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·지정) 제11조(금융지원 등) 제3장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제12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·표시) 제13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) 제14조(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) 제15조(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) 제16조(과태료)	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) 제4조(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) 제5조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) 제6조(사업 실적 등의 보고) 제7조(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) 제8조(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) 제9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절차) 제10조(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) 제11조(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표시) 제12조(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) 제13조(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) 제14조(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) 제1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제15조(과태료 부과·징수의 절차)

자료 : 고령친화산업진흥법,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

2.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필요성

㉮ 법률규정에는 범부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, 보건복지부·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

- 법 제2조제4항에 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을 기획재정부·미래창조과학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로 정의

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〉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령친화제품등”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·용품 또는 의료기기
 - 나.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
 - 다. 노인요양 서비스
 - 라. 노인을 위한 금융·자산관리 서비스
 - 마.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
 - 바. 노인을 위한 여가·관광·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
 - 사.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
 - 아.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2. “고령친화산업”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·개발·제조·건축·제공·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.
3. “고령친화사업자”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4. 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·미래창조과학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- 하지만 보건복지부,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, 전담부서 혹은 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
-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(재)부산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나 관련 예산은 없음
-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총괄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개별적 유사정책 추진, 정책의 비효율성과 영세성을 초래하므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

❶ 타 산업진흥 관련 법령에는 실태조사 조항이 존재하나, 현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실태조사 조항이 부재함

-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고령친화 용품산업 실태조사가 있으며,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 현황 분석,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등이 있음
- 고령친화제품이 “노인을 위한 제품”으로 정의되다 보니, 고령친화제품 연구부터 유통 또는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주 또한 파악하기 어려움
- 따라서 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 마련이 필수적임

❷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고령친화식품산업의 범위를 “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”로 정의하고 있어 식품업체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

- “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”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(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2), 고령친화식품이 나온다면 가장 구매하고 싶은 식품으로는 ‘영양 성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품’을 꼽았음(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4)
-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, 고령자들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음
-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 및 산업체의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등 수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음
-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,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반해,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만 포함되어 있어 기능성만이 아니라 섭취가 용이하고 영양이 풍부한 일반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확대가 필요
- 일본의 경우 저작능력을 중심으로 개발된 개호식품(Care Food)을 통해 저작문제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식품제조 및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세분화 하여 6단계(스마일케어식, Smile Care Food)로 구분

- 또한 일본에서는 음식배달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은 세븐 밀(seven meal)이라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, 패밀리마트는 신문 판매점과 연계하여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음식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
-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 물성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,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기술 및 유통망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 마련, R&D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
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〉

제2조(정의) 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노인을 위한 의약품·화장품
2.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·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
3.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

② **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·표시)에 따라 2008년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하고 있음**

- 우수제품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(S마크 표시) 지정·표시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음
-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(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)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27가지 품목이 고시되어 있음

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〉

제12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·표시)

-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(이하 “우수제품”이라 한다)으로,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(이하 “우수사업자”라 한다)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❶ 고령친화제품뿐만 아니라 요양 등 각종 고령친화서비스들이 각광받고 있지만, 우수서비스를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

- 소비력을 갖춘 중고령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전반의 편리성 구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음

* 중고령자(45세 이상)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운동훈련용품, 주거설비용품, 생활보조용품 등의 제품과 건강지원서비스, 일자리지원 서비스,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함(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, 2012)

- 고령친화서비스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이며, 고령친화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
- 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통한 서비스 인증사업은 고령친화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
-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비해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 및 지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고령친화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하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이 필요

❷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(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), 제8조(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)에서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타법과 달리 목표 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

-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,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기준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어 품목 등이 제한될 수 있고 단체표준 등 취소 시 연계 취소되어 제도 운영 목적에 장애로 작용
-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, 인증기준이라기 보다는 평가 요소에 한정되어 있어 인증의 목적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

❸ 따라서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·시행령 개정(안) 및 시행규칙 신설(안)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

III. 결론 및 시사점

- 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,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신설 등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
- ② 고령친화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과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등 발전방안 수립이 미흡함
 -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과 분석이 미흡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함
 -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추진 상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등 수립을 위한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 -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16~2020)에서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,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(Single government)를 확립하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분류체계 정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
- ③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개선 및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시행이 필요함
 - 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 지정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표준화 절차를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 제도의 목적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현행 지정요건의 개정 필요
 - 고령자의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승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고,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 등 재설정 필요

-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며, 특히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음
 -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
 - 특히 식품산업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격·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체의 접근 및 성장이 어려우므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닌 일반식품 및 식사지원서비스까지로 넓힐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정책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함

참고문헌

-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제주의 향후 과제, 고승한, 제주발전포럼 제41호
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- 고령친화산업진흥법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- 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 제8조(고령친화산업 표준화) 및 제12조(우수제품 등의 지정·표시)의
입법영향분석, 원시연, 국회입법조사처, 2016
- 일본의 고령자 개호식품 실태분석과 시사점, 선우덕, 보건복지포럼, 2016
- 한·중·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현황과 시사점, 황남희, 보건복지포럼, 2016
-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2
-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4
-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사회 대책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7
- 고령친화 유망서비스산업 현황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17
- 경제와 노후생활, 현대경제연구원, 2014
-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, 대한민국 정부, 2016
- 고령친화식품 시장 키운다, 표준마련, R&D 투자확대, 문화투데이, 2017
-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, 김미곤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&
리포트, 2016
- 고령자의 식품선호도 및 고령친화식품 요구도에 관한 연구-서울시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
심으로-, 신광진 등,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6(1) 1~10, 2016

연구자 :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희진 연구원

본 리포트는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며,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TEL : 043-713-8277, E-mail : heejin9602@khidi.or.kr

고령친화산업 REPORT

| 발행일 | 2017년 5월

| 발행인 | 이영찬

| 발행처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<http://www.khidi.or.kr>

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<http://www.esenior.or.kr>

| 인쇄처 | 예지인쇄
